SEEKING FOR THE BEST

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

(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)

Nov 2. 2026

공인노무사 황 지 호
공인노무사 서 강 준

노동법률자문/인사노무컨설팅/경영지도

개요

발표 내용

• ’26. 10. 29. **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**를 거쳐 **관계부처 합동**으로 **「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」 발표**

관계부처 : 고용노동부 · 재정경제부 ·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

• **핵심 내용**

①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

②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

추진 배경

• **’25년 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 41.1%**(8,229억원)

• **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26.5%**로 최근 10년간 정체

• **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**는 **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**이라는 인식

진행 상황

• **정부 방안 발표** 단계

• **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안** ’26. 11. 중 마련

• ’26. 12.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

→ 사외적립 의무화 등은 **법 개정 후 적용**

1. 현행 퇴직급여제도

퇴직급여제도	특 징
퇴직금	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**※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제재처분 없음**
확정급여형(DB)	사용자가 운용 결정 /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액(≒ 퇴직금) 지급, 수익률이 근로자 급여액에 영향 없음
확정기여형(DC)	근로자가 운용 결정 / 사용자는 근로자 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 납입, 운용손익을 급여로 수령
개인형퇴직연금(IRP)	근로자가 운용 결정 / 퇴직 시 수령한 급여와 자기 부담금 추납, 운용손익을 급여로 수령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	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운용 / 운용손익을 급여로 수령

『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』의 방향성

현 행 **퇴직금 · 퇴직연금(DB · DC 등)** 중 설정

개 편 **전 사업장 퇴직급여**를 **회사 밖(퇴직연금)**에 **적립**
계약형(DB · DC) + 기금형(3개 유형)

2.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

추진 예정

준비기간	1단계	2단계	3단계
2027년 법 개정 후 1년간 준비	2028년 1월~ 100인 이상 해당 사업장 수 18,319개	2029년 1월~ 10 ~ 99인 해당 사업장 수 319,231개	2030년 1월~ 10인 미만 해당 사업장 수 1,767,543개

적용 범위 :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

예시) 50인 사업장이라면 2029. 1.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분부터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됨

- **의무화 이후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**은 **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**하도록 하되, **일정 기간 내 탈퇴**할 수 있는 **선택권** 보장
- **상기 일정**은 **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안이 연내 통과**되는 경우를 **전제**로 함.

※ 사업장 수는 '2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(누적 수치 아님). 자료 : 「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」 p.4

3. 중소기업 지원

추진 예정

구 분	요 건	지 원 내 용
조기도입 재정지원	**1. 30인 미만** 중소기업 **2. 의무화** 적용 시점 **이전** **3. 퇴직연금**을 **조기 도입**	**최저임금 130% 미만 근로자**의 **부담금 10%**를 사용자에게 지원
경영자금 융자지원	**1. 50인 미만 중소기업** **2. 퇴직연금** 신규 **도입 후 1개월 경과**	경영자금 융자 시 **대출금리 2%p 이차보전**
수수료 특례	**30인 미만** 중소기업	**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**를 **3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수수료 중 가장 낮은 요율로** 설정(고시 개정)

기존 지원(계속)

- **세제** : 퇴직연금 **납입액**에 대해 **12%**(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5%) **세액공제**(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 900만원 한도)
- **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** : **최초 가입 시 3년** 수수료 면제
  이후 사용자계정 0.2% · 가입자계정 0.1%

※ 조기도입 재정지원(60억원) · 경영자금 융자지원(62억원)은 '27년 정부 예산안 반영 사항(국회 예산 심의 전), 수수료 특례는 고시 개정 예정 사항임.

4. 사외적립 이행 관리 강화

확정급여형(DB) — 현재 적용

- **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정기감독 지속 확대**

'26년 하반기 500개소 최초 감독

- **적립 부족**(최소적립금의 95% 이하) 시

- **1년 이내** 부족비율의 **1/3 이상 해소 의무**

- 미이행 시 **1천만원 이하 과태료**

확정기여형(DC) — 추진 예정

- **사업주 부담금 미납 현황 파악 체계 구축**

- **사용자 임금 정보 제공 의무** 신설

- 소득 정보 연계 등을 통해 **미납 현황 파악**

- **미납 사업장**에 대한 **조치계획 마련**

퇴직연금 규약 신고 의무 간소화 — 추진 예정

구분	내용
현 행	규약 작성(노사합의) → 고용노동부(지방관서) 신고 → 심사 및 결과통보(7일 이내) →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
개 선	사용자의 규약 신고 의무 완화(중퇴기금과 동일하게 계약서로 갈음) 추진 **※ 근로자대표 동의 및 의견청취 절차는 그대로 유지**

5.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

법 개정 후

전문성을 갖춘 제3자(수탁법인)가 **적립금을 대신 운용**하고, **수익 ·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**되는 제도 (**DC · IRP**에 적용)

금융기관 개방형

- **민간 금융회사**가 별도 **수탁법인 설립**
- **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적립금**을 **기금화**

연합형

- **복수 사용자 연합**이 **수탁법인을 설립**

또는

- **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**이 **개방형으로 운용**

공공기관 개방형

- **공공기관**이 **300인 이하 사업장 등을 대상**으로 **운용**(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)

도입 방법 및 도입 형태

- **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**를 거쳐 **사업장 단위**로 도입(현행 방식 유지)
- **한 사업장**에서 **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설정**하거나, **여러 기금을 설정**할 수 있음
- **근로자대표 동의**를 거치면 **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(디폴트)**으로 **설정 가능**
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: ’27. 1. 100인 → **’28. 1. 300인 이하**

※ ’26. 10. 29. 관계부처 합동 발표안 기준이며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.

6. 근로자 수령 · 운용 관련 개선

추진 예정

구분	현 행	개 선
중도인출 대체	주거, 의료비 등 **긴급한 사유로 중도인출**	**담보 대출상품 출시**를 위한 **제도 개선** (담보제공 한도 50% → 70% 등)
연금 수령	퇴직급여 수급 시 **일시금 또는 연금** 자유롭게 **선택**	**'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자동 지급'** 도입 검토
수령 전 안내	-	**비교정보 사전 제공 의무화** - 연금 · 일시금 수령 시 기대수익, 수령액 등 정보 공개
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	**적립금의 70%**	**단계적 완화**
DC · IRP 투자 상품	종합투자계좌(IMA), 발행어음 **투자 불가**	**투자 허용**
디폴트옵션	**만기 " 후 " 4주**에 적용 **통보**, **만기 " 후 " 6주**에 적용 **개시**	**만기 " 전 " 2주에 통보** **만기 " 시 " 적용**(대기성 운용기간 축소)

※ '26. 10. 29. 관계부처 합동 발표안 기준이며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.

시사점

지금 확인할 사항

- **퇴직급여제도 현황 파악**

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**퇴직금 추계액**(전 직원이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지급액)을 **미리 산정**

- **DB형 적립비율 · DC형 부담금 납입 점검**

DB형 : **'26년 하반기**부터 **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정기감독**(500개소) 실시

DC형 : **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**을 **규약상 부담금 납입 일자에 납입**하고 있는지 확인

법 개정 후 준비할 사항

- **적용 시점에 맞춘 적립 재원 계획**

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화 시점(100인 이상 '28. 1. / 10~99인 '29. 1. / 10인 미만 '30. 1.)과 그 이후 **근로기간분의 적립 규모를 미리 검토**.

- **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**

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에는 **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**하므로(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), 도입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함.
특히, **30인 미만 사업장**은 **조기 도입 지원도 함께 검토**할 것.